

보상위원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범위]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[권 한]

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.

1. 이사회 의장의 기본연봉, 인센티브의 책정
2. 임원 인센티브 재원의 책정
3. 임원 보상 관련 제도의 신설, 변경 및 폐지 검토/승인
4. 기타 임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

제2장 구 성

제4조 [구성]

1.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2.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3.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
4.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5.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[위원장]

1.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결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임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3.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 [소집권자]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[소집절차]

1.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2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3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8조 [결의방법]

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,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3.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 해당 위원은 출석인원 산정 시에는 포함하되, 의결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제9조 [관계인의 의견청취 등]

1.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3.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 [의사록]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1조 [이사회 보고 및 재결의]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이사회는 필요 시 해당 안건에 대해 재심의하거나, 별도로 결의할 수 있다.

제12조 [규정의 개폐]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